

개정 지하수법의 주요 내용

원 종 호
(한국수자원공사)

1993년 12월 10일 제정되어 1994년 5월부터 시행되어온 지하수법은 그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1997년에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면개정에 이어 1999년에 행정규제 완화 차원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금년 1월 16일에 다시 개정, 공포되었다(법률 제6368호).

이번 지하수법 개정은 지하수의 과다개발·오염심화 등 지하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하수의 공적 관리체계 확립과 지하수오염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지하수의 양적·질적 보전·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바, 그 주요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다(붙임 지하수법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제1조의 “공공의 복리증진”을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구체화
- 제3조에 국민의 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 확립 도모
- 지하수관리정보인프라 구축 근거 규정(제5조의2) 신설로 지하수 보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지하수 정보제공기능 강화
-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온천수, 먹는물, 농어촌용수 등을 포함토록 보완하고(제6조), 지자체별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규정(제6조의2) 신설로 계획의 실효성 제고
- 기존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허가·신고가 면제되었던 소규모 가정용·농업용시설도 신고대상으로 하여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제7조의3)을 신설하여 규모가 큰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지하철·터널 등 지하구축물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의 저감대책과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제9조의2)을 신설, 귀중한 지하수자원의 낭비 방지 도모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의4)을 신설, 폐공 발생 방지 및 체계적인 지하수정보 획득 도모

- 지하수보전구역을 보전지구, 개발제한지구로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지하수를 보호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급수정을 오염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제12조 및 제13조)하여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지하수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단위 보조관측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수 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수량·수질의 관리체계 구축(제17조 및 제18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와 이들 시설에 의한 지하수오염여부를 감시하고 오염시 정화를 실시토록 하는 등 유해물질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제도 강화(제16조의2~제16조의4)
- 지하수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를 전문으로 하는 지하수정화업체도 신설(제29조의2)

이번 지하수법 개정을 통하여 그간 미비하였던 오염지하수의 정화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보완 또는 신설됨에 따라 지하수의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는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번 지하수법 개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지하수법 개정에서 신설 또는 보완된 규정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어 한정된 귀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지하수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법
<p>第1條(目的) 이 법은 地下水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의 福利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目的)----- ----- 地下水開發·利用의 적정을 기하고 地下水汚染을 예방하여 公共의 福利증진-----.</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라 함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를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p>	<p>第2條(定義) -----. 1. ~ 4. (현행과 같음) 5. “地下水淨化業”이라 함은 地下水에 含有된 汚染物質을 제거·分解 또는 稀釋하여 地下水의 水質改善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p>
<p>第3條(國家의 責務) (생략) <신설></p>	<p>第3條(국가 등의 責務)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은 국가의 地下水保全·管理施策에 협력하고, 地下水保全과 汚染防止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第5條의2(地下水保全·管理의 정보화)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調査資料와 그밖에 地下水保全·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情報體系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情報體系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6條(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全國의 地下水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p> <p><신설></p>	<p>第6條(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4호의2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은 環境部長官이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基本計劃에는 溫泉法에 의한 溫泉水,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漁村用水(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管理法에 의한 먹는</p>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第7條(地下水開發·利用의許可) ①地下水を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査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

샘물 및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濟州道地域 地下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地下水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基本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基本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의2(地域地下水管理計劃의 수립·시행)

①市·道知事は 基本計劃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地域地下水管理計劃(이하 “地域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地域管理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地域管理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は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管理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地域管理計劃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地下水의 水量管理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地域管理計劃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地下水開發·利用의許可)

①-----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査書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3. ④ (생략)

⑤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 檢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⑦ (생략)

<신설>

<신설>

----- 이 경우 市長·郡守는 基本計劃 및 地域管理計劃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④ (현행과 같음)

⑤-----

-----할 수 있다.

6.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1. 市長·郡守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첨부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河川의 管理廳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地下水開發·利用이 河川의 水量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取水量·取水期間의 제한 및 取水禁止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市長·郡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河川의 管理廳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河川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既得河川使用者가 損失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既得河川使用者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有效期間은 5년으로 한다.

② 市長·郡守는 地下水開發·利用許可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有效期間의 연장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 1. (생략)
- 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林漁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 5.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第8條(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

- 1. (현행과 같음)
- 2.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農業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市長·郡守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이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및 取水期間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禁止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適當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流出地下水의 利用 등) ① 地下鐵·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 그밖의 施設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地下水가 流出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建築物 등의 竣工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地下水가 流出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利用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의 流出減少對策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流出地下水의 利用計劃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利用率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12條(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市·道知事は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地域을地下水保全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地下水의 枯渴, 地盤의 沈下 또는 地下水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2.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3. 기타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地域으로서 人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제9조의3(地下水開發·利用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地下水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土地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調査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4.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人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②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土地의 굴착에 따른 地質·水量 기타 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人統領令이 정하는 정도로 地下水의 水量 또는 水質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土地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管理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市·道知事は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地下水保全地區
 - 가.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 나. 주된 用水供給源이 되는 帶水層이 있는 지역
 - 다. 人統領令이 정하는 公共給 水用地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중심에서 人統領令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水質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 라.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지역

2 ~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第13條(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市長 ·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2. 다음各H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 가. ~ 다. (생략)

<신설>

2. 地下水開發制限地區

가. 地下水開發 · 利用量이 基本計劃 또는 地域管理計劃에서 정한 地下水開發可能量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地下水의 지나친 개발 · 이용으로 인하여 地下水의 枯涸現象 · 地盤沈下 또는 乾川化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地下水의 개발 ·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生態系의 生育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2 ~ 5 (현행과 같음)

6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 · 道知事에게 地下水保全區域의 指定을 명할 수 있다.

1. 地下水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指定할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指定을 하지 아니하여 地下水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水質保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요청한 지역

3.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 ·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7 市 · 道知事は 地下水保全區域을 指定한 경우에는 地下水保全 · 管理對策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8 (현행 제6항과 같음)

第13條(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

---排出 · 제조 또는 貯藏하는 施設로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신 설>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15條(原狀復舊등) ①이 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 · 認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 · 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復舊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의 기준 · 방법 ·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3. (현행과 같음)

②市長 · 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開發制限地區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 ·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15條(原狀復舊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9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土地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市長 · 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狀復舊義務者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시설의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를 위하여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사용할 수 있다.

1. 原狀復舊義務者가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原狀復舊가 요청되는 경우

2. 原狀復舊義務者가 불분명하여 地下水開發 · 利用施設 또는 土地의 굴착시설 등이 放置된 경우

⑤-----제4항-----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汚染防止 등)

①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조치와 地下水汚染觀測井을 설치하고 水質測定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測定 결과를 市長 · 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地下水保全區域에 설치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2. 地下水の 汚染防止를 위하여 汚染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觀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下水汚染이 우려되거나 地下水汚染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신고한 내용을 調査·확인하여 汚染防止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 地下水의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汚染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地下水의 水質을 復原할 수 있는 淨化作業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敷地와 그 주변지역의 地下水汚染 정도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淨化基準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汚染誘發施設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閉鎖·撤去 또는 移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汚染地下水 淨化計劃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호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汚染된 地下水를 淨化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命令을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染地下水 淨化基準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地下水淨化計劃을 작성한 후, 이를 市長·郡守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長·郡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淨化事業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17條(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등) ①建設交通部
長官은 地下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水位變動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下水의 水量·水質등
利用實態를 調査하여 環境部長官 및 建設
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
體의 長이 關係法律에 의하여 地下水開
發·利用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
의 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市·道知事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第18條(水質汚染의 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地下
水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全國의 地下水에
대한 水質汚染實態를 測定하여야 하며, 測
定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
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의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
다.

第17條(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 ①-----
전국적인 地下水觀測施設(이하 "國家觀測
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管轄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變動實態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
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市·道知事が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補
助觀測網을 설치하고 자 하는 때에는 觀
測網의 위치, 構造圖, 測定裝備 등이 포함
된 補助觀測網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建設
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は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觀測網의 위치
및 構造圖, 測定項目 등을 명시한 觀測網
設置計劃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觀測網
設置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觀測網의
設置區域이 제18조 의 規定에 의한 水質
測定網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
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
은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觀測網
의 설치기준, 觀測網의 수, 觀測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水質汚染의 測定) ①-----
-----地下水水質測定施設(이하 "水質測
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全國의-----

②-----水質測定網의 설치기준·설치
구역 등에 관하여-----

<신 설>

第19條(水質基準) 地下水의 水質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水質檢査등)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는 定期적으로 地下水關聯 檢査 專門機關의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淸掃川水 및 造景川水등 水質이 地下水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結果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記錄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1條(出入檢査등) ①市長·郡守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水質檢査履行 여부, 記錄簿 備置 여부 또는 地下水開發·利用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의2(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建設交通部長官,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제17조 및 제18조의 規定에 依한 地下水觀測施設 및 水質測定網의 設치를 爲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土地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依한 收用 또는 사용의 절차·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삭 제>

第20條(水質檢査등) ①-----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자는-----
-----<단서 삭제>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항의 規定에 依한 水質檢査 결과 該 水質이 環境部令이 定하는 水質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이용중지 또는 水質改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檢査結果書を 비치하여야 한다.

第21條(出入檢査등) ①-----
-----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
-----水質檢査結果書 비치 여부, 地下水開發·利用狀況 또는 제16조 의2의 規定에 依한 地下水汚染防止 조치상황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25條(登録의 取消등) ①市·道知事は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의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6號·第7號 및 第1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録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登録을 한 때
 - 4. ~ 12. (생략)
- ②·③ (생략)

第27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録)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필요한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9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録取消등) ①市·道知事は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4號·第6號 및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8. (생략)
② (생략)

<신설>

第25條(登録의 取消등) ①-----

-----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 3. -----
 - 4.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第27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録) ①-----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29條(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録取消등) ①-----

-----제4호 또는 제6호-----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地下水淨化業의 등록) ①地下水淨化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技術能力·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地下水淨化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地下水淨化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第31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第5條·第7條(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測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礙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고자 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 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第33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檢査·登録을 申請하고자 하는 자는 第1號·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第3號의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檢査·登録을 申請하고자 하는 자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그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淨化作業의 경우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地下水淨化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은 “地下水淨化業”으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地下水淨化業者”로 본다.

第31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調査·淨化·觀測-----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③-----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가-----

④·⑤ (현행과 같음)

第33條(手數料)-----

-----第4號 또는 第5號-----

-----第3號 또는 第6號-----

1. ~ 5. (생략)
- <신설>

第34條(보고·檢査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地下水影響調查機關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務所등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第35條(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取消
4. (생략)

第37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

3. ~ 6. (생략)
- <신설>

7. (생략)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한 자
9.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그 相對方
10.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查機關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地下水影響調查業務를 한 자
11.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影響調查機關 및 그 相對方

1. ~ 5. (현행과 같음)
6. 第29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淨化業의 登錄

第34條(보고·檢査등) 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查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

- ② (현행과 같음)

第35條(청문)-----

1. 2. (현행과 같음)
3. 第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한 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第37條(罰則) -----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

1. (현행과 같음)
2. 第8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신고를-----

3. ~ 6. (현행과 같음)
- 6의2. 第1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7. (현행과 같음)
8. 第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汚染物質의 淨化,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閉鎖·撤去 또는 移轉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삭제>

<삭제>

<신 설>

- 제37조의2(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書を 허위로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汚染防止措置 또는 觀測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水質測定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汚染發生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化業을 영위한 자

<신 설>

- 제37조의3(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取水量 및 取水期間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停止命令·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流出地下水 低減對策 또는 利用計劃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淨化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淨化를 실시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이용중지 및 水質改善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第3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7條 各號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8條의2(過怠料)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500萬 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39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생략)

第4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1. 第9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10. 第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地下水影響調査業務 또는 地下水淨化業을 영위한 者

11. 第26조(제29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第38條(兩罰規定)-----

-----제37

조 내지 제37조의3의 1-----

-----각각 해당 조-----

<삭 제>

第39條(過怠料)-----

-----500萬원 이하-----

1. 第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者
2. 第9조(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9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利用計劃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9조의3의 規定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9조의4제1항의 規定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6. ~ 8. (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第40條(過怠料)-----

-----300萬원하

1. 第2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結果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2. 第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者

<p>3. <u>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簿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u></p> <p>4. <u>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虛偽資料의 제출을 한 者</u></p> <p>5. 削除</p> <p>6. <u>第2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讓渡·讓受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u></p> <p>7. <u>第3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u></p> <p>8. <u>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한 때</u></p>	<p>3. <u>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한 자</u></p> <p>4. <u>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准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또는 地下水淨化業의 讓渡·讓受 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자</u></p> <p>5. <u>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자</u></p>
<p>第41條(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①第38條의 2·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賦課·徵收한다. ② ~ ④ (생략) <신설></p>	<p>第41條(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等)①제39조-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特別市·廣城市 또는 道 및 市·郡 또는 自治區는 제39조 및 제40조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등의 수입을 管理할 特別會計를 條例로 設치하여 運營할 수 있다.</p>